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495

발의연월일: 2021. 4. 14.

발 의 자: 권영세・김기현・金炳旭

박대출 • 서병수 • 양금희

유창현 • 이명수 • 이 영

정찬민 · 지성호 · 태영호

허은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9억까지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2021년 현재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했음.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 늘었음.

이와 더불어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종부세, 재산세 등 총 63가지 각종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 또한 폭 등이 예상되는 상황임.

현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은 종부세가 처음 신설된 200 9년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제8조(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	
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자(이하"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u>3억원</u> 을 공제한 금	<u>6억원</u>
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	
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	
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	
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l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